



제422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등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25호)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26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32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6
1.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6
2.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교원 등에 대한 휴직 근거 마련	27
3.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건강상 직무 수행 불가능자 추가	30

I. 개요

【 조정훈 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7.
3. 회부연월일: 2025. 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이에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가.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 1)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 2) 임용권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을 직위해제 외에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경우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 1)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 2) 질병휴직 사유 중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교원을 복직시킬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의무화.
- 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 그 신뢰도를 제고.
- 4)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회부되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 정을호 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7.
3. 회부연월일: 2025. 2. 1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 윤준병 의원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8.
3. 회부연월일: 2025. 2. 1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후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운영 방안을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함.

또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부에 보고 및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직무수행 적합성 관련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각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규칙 등으로 규정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① 조정훈의원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② 윤준병의원안 제44조 및 제44조의3 신설 등

현 행	① 조정훈의원안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③ ~ ⑤ (생략) <u><신설></u>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u> ② ----- ----- ----- ---. <u>다만,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유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44조의3에 따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u>⑥ 학교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u>

1)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포함

현행	① 조정훈의원안
	<u>는 사람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이 우선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u>
<u><신 설></u>	<u>⑦ 임용권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u>
<u><신 설></u>	<u>⑧ 제6항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되는 교원은 잔여 병가와 연가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서 배제된다.</u>
<u><신 설></u>	<u>제44조의3(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u> <u>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여부</u> <u>2. 제44조제1항제1호로 휴직한 사람의 복직 여부(정신상의 장애로 휴직</u>

현행	① 조정훈의원안
	<u>한 경우로 한정한다)</u> 3. 제44조의2제1항제5호로 의심되어 임용권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제44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 5. 제44조의2제6항에 해당되는 사람 의 복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의 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대한 심의 시 임 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심의대상자로부터 제 출받아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대한 심의 시 심 의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 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진술 없이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 후 재심의, 직권 휴직, 직권면직 심의 회부 중 하나로 결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 후 재심의, 직권휴직 중 하나로 결정 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의견을 들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현행	① 조정훈의원안
	<u>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⑨ 제44조의2제6항에 관한 사항을 긴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② 윤준병의원안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u><신설></u>	제44조(휴직) ①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하는 경우</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3(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u> <u>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의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u>

현행	② 윤준병의원안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속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판단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활 또는 치료 등 지원사항 4.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준하는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휴직을 명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행	② 윤준병의원안
	⑤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회가 복직하려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복직 및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심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 재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질병휴직 필요성, 복직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의 또는 의견제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와 질병휴직위원회(「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를 운영하고 있음.

[표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병휴직위원회 현황

구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근거	· 각 교육청별 규칙	·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교육부 예규)
운영	· 서울 등 13개 교육청 *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 전체 17개 교육청
대상	· 전체 교원 중 해당 교원	· 교육공무원 중 해당 교육공무원
심의 사항	·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래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아래 조항의 조치(휴직, 직권 면직) 필요성 · 아래 조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58조제1항제1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7호의3(난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2. 서울은 심의사항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에 대한 것으로 규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각 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 및 제2조,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 및 제2조 내용 정리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준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에서는 2022년 4건, 2023년 20건, 2024년 41건, 2025년 2월 기준 5건이 심의되었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교육청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병휴직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2.	합계
서울	-	2	5	-	7
부산	-	1	-	-	1
대구	-	-	-	-	0
인천	2	2	9	1	14
광주	-	-	-	-	0
대전	-	-	-	-	0
울산	-	1	2	-	3
세종	-	-	-	-	0
경기	-	2	3	-	5
강원	-	-	-	-	0
충북	-	1	6	2	9
충남	-	3	3	-	6
전북	2	3	3	1	9
전남	-	-	1	-	1
경북	-	2	8	-	10
경남	-	-	1	1	2
제주	-	3	-	-	3
합계	4	20	41	5	70

자료: 교육부

위원회 심의건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거나,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하여 면직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해당 사안의 심의나 의견청취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각 개정안은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각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위원회 명칭

위원회 명칭으로 ① 조정훈의원안(제44조의3)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규정하고, ② 윤준병의원안(제44조의3)은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함.

① 조정훈의원안은 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한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위원회 명칭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위원회 명칭은 ‘질환교원’과 ‘질병휴직’으로 특정되어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 목적이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심의하여 해당 교원과 학생, 학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는 이에 부합하는 명칭인 것으로 보임.

한편, ② **윤준병의원안**은 위원회 명칭을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명칭에서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임.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은 교원 이외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²⁾ 개정안의 명칭에 따른 위원회의 적용대상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비하여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질병휴직위원회와는 동일함.

다만, 개정안에서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법제화하는 취지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적용대상을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2) 위원회 심의사항

① 조정훈의원안(제44조의3제1항)과 ② 윤준병의원안(제44조의3제1항)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① **조정훈의원안**(제44조의3제3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휴직 관련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여부(제1호), 정신상 장애로 질병휴직한 사람의 복직 여부(제2호),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직위해제 사유)로 의심되어 임용권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3호),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해제 사유 소멸 여부(제4호), 직무배제(개정안에 따라 신설)에 해당되는 사람의 복귀 여부(제5호) 등을 규정함.

이 중, 휴직 관련 직권면직 여부(제1호)와 정신상 장애로 질병휴직한 사람의 복직 여부(제2호)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유사한 사항임.

한편, 개정안 제44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를 신설된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개정안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로 의심되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관련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44조의3제2항제3호)과 해당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후, 직위해제 사유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같은 조 제4호)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는 개정안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신설된 직위해제 사유임.

이와 관련하여 직위해제를 살펴보면,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³⁾ 현행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중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기관 조사 중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자’ 등이 규정됨.⁴⁾

3) 인사혁신처, 「2024 공무원 인사실무」, 2024.1. 445쪽 참고

4)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안에서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하고 능력을 회복할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정신적 어려움 등에 대한 사항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직위해제 및 해당 사유 소멸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경우, 임용권자가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

신설된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교원이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 대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44조의3제2항제5호는 ‘제44조의2제6항’에 해당되는

5)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람의 복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제44조의2제6항’은 신설된 직위해제 사유(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치(이하 “직무배제”라고 함)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내용임.

구체적으로 직무배제는 학교의 장이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임용권자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제44조의2제7항에서 직무배제와 관련하여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운영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직무배제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무에서 긴급하게 배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며, 직무배제된 사람이 복귀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긴급하게 직무배제된 사람에 대해 직무 복귀가 가능한지 전문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만, 직무배제는 긴급한 필요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 판단에 따라 임용권자가 조치하거나 학교장이 조치하고 임용권자가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오남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배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제44조의3제9항에서 ‘제44조의2제6항(직무배제)에 관한 사항을 긴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4조의2제6항에서 직무배제는 학교장과 임용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는 규정되지 않아, 제44조의3제9항에서 긴급하게 심의하려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참고로, 개정안에서 직무배제와 관련한 위원회 심의는, 직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진 후, 해당자의 복귀 여부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제3항제5호)만 규정됨.

아울러, 개정안에서 직무배제는 직위해제의 요건과 이에 따른 조치를 규정한 현행법 제44조의2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직무배제는 직위해제 보다 긴급하게 단기간에 취해지는 조치이고, 그 대상이 신설된 직위해제 사유(안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 직위해제와 공통된 사항이 없으므로, 직위해제 조항과 분리

하여 직무배제, 긴급조치 등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② **윤준병의원안**(제44조의3제2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속성 여부(제1호), 직무 수행 불가능 판단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 여부(제2호), 직무 수행 불가능 판단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활 또는 치료 등 지원사항(제3호), 직무 수행 불가능 판단으로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여부(제4호) 등을 규정하고, 제44조의3제5항에서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휴직된(제44조의3제3항) 교육공무원의 복직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이 중,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제2호)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여부(제4호)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유사한 사항임.

한편, 개정안 제4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44조의3제5항은 그 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개정안 제44조의3제2항제1호는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2호)을 심의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속성 여부에 관한 사

할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먼저 직무 수행의 지속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휴직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 여부의 심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절차에 따라 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44조의3제2항제3호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할 또는 치료 등 지원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할 또는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이 직무 수행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제44조의3제5항에서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휴직된 교육공무원의 복직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로 ① 조정훈의원안과 ② 윤준병의원안은 해당 교원에 대한 치료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① **조정훈의원안**(제44조의3제8항)은 위원회 심의 결과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 후 재심의, 직권휴직’ 중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의견을 들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② **윤준병의원안**(제44조의3제4항)은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휴직된 교육공무원의 재활 및 치료 지원을 위해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치료, 상담 등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현행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제20조에서 관할청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⁶⁾ 제22조에서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⁷⁾ 제29조에서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6)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7)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8) 「교원지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 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2025.1.7.)된 바 있으므로,⁹⁾ 이에 따라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한편, 각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심의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며, 각 개정안은 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396호)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표 3] 심의위원회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091호)	고동진 의원	2025.2.12./ 2025.2.13.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2	교육공무원법 (제2208113호)	박덕흠 의원	2025.2.12./ 2025.2.13.	•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 (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3조의3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138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4	교육공무원법 (제2208153호)	김기현 의원	2025.2.14./ 2025.2.17.	•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시 질환교원심의 위원회 심의 의무화 (안 제45조의2 신설)
5	교육공무원법 (제2208160호)	고민정 의원	2025.2.14./ 2025.2.17.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휴직 교원 복직시 심의 의무화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교원 등에 대한 휴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질병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 교장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정을호의원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휴직) ① (생략) <u><신설></u>	제44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u>② 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질병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 교장이 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

개정안에서 교장이 휴직을 요청하는 것은 재량이나, 교장이 요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의 휴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¹⁰⁾과 유사함.

이러한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것이므로, 교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한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사실상 직권휴직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이 필요한 교원을 교장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휴직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0)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질병, 병역,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입 휴직 등이 해당됨.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제1항 내용]

구분	종류	휴직 요건	휴직 허가
직권 휴직	(제1호)질병, (제2호)병역, (제3호)생사불명, (제4호)법정의무수행, (제11호)노조전입	휴직 사유 발생	의무
청원 휴직	(제5호)해외유학, (제6호)임시고용, (제8호)연수, (제9호)가족돌봄, (제10호)배우자의 국외 근무·유학·연수, (제12호)자기개발	휴직 사유 발생 + 본인 의사	재량
	(제7호)육아, (제7호의2)입양, (제7호의3)불임·난임치료	휴직 사유 발생 + 본인 의사	의무

또한 개정안은 질병휴직 후 복직한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휴직 후 복직한 교원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휴직기간을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면서,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휴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 동안 근무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건강상 직무 수행 불가능자 추가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제10조의4(결격사유)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u> <u>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u>

현행법 제10조의4는 결격사유¹¹⁾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제2호),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

1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제3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제4호)가 있음.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추가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교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¹²⁾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¹³⁾

12)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3)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개정조문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에는 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해당되며,¹⁴⁾ 「사립학교법」에서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¹⁵⁾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는 모든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됨.

따라서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9

1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15)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